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청구]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2020. 7. 22.

판결 선고2020. 8. 12.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6. 12. 6. 접수 제54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증여약정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F가 1993. 4. 13.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G, 피고 C에게 상속되었다.
- 2) 피고 C는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C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원고에게 1)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의 배임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

- 1)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1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의 1/2 상속지분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 D에게 2016.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2) 피고 C는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543호,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8노1462 형사사건에서 2019. 1. 16.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3.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와 부친 E은 G 및 피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증여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의 부친 E이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D과 부친 E이 피고 C와 공모하여 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매매계약 후인 2016. 12. 15.

군산시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함께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유죄의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반면, 피고 D은 피고 C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장성진

별지

1) 실제로는 원고의 부친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